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

물 품	기 간	방 법
1.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물품(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가.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나.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억원 이상인 물품 라. 임차선박	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6월 분할납부승인일부터3년6월 분할납부승인일부터4년6월 가목 내지 다목의 기간내에서 임차기간내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	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분하여 제1차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차분은 2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물품(별표 4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구 에 설립한 의료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분할납부승인일부터1년6월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별표4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한 의료기관이 수입하는물품	분할납부승인일부터4년6월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물품 및 법 제107조제2항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

제1호의 물품중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분할납부승인일부터 2년6월	
나.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분할납부승인일부터 3년6월	
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분할납부승인일부터 4년6월	